

「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」
관리대행(민간위탁) 동의안



구 미 시

「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」 관리대행(민간위탁) 동의안

의 안 변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의무운영기간 만료(21.05.31)에 따라 시설물의 안정적인 인수·인계 및 효율적인 슬러지 처리 운영 추진을 위해 민간에 관리대행(민간위탁)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(민간위탁)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(추진근거)

- 「하수도법」 제19조의2
-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15조의3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

○ (필요성)

- 기 의무운영기간 만료 도래 및 유사시설 경험을 통한 안정적 운영

다. 위탁시설 개요

1) 시 설 명 : 구미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

2) 위 치 : 칠곡군 석적읍 3공단 1로 62-6(구미하수처리장내)

3) 시설규모

- 대지면적 : 5,694m²
- 연 면 적 : 4,698m²(전체 3층)
- 시설규모 : 300톤/일(하수슬러지 건조·탄화)

4) 총사업비 : 43,750백만원(국 70%, 도 6.3%, 시 23.7%)

5) 주요시설

- 슬러지 반입 및 공급시설
- 슬러지 건조/탄화 시설
- 악취제거설비 등

라. 위탁기간 : 2021. ~ 2024.(3년)

※ 2018. 9. ~ 2021. 5. (턴키 시공사 (주)엔바이오컨스에서 의무운영중)

마. 수탁자 선정방식

○ 하수도법 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
-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

○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(환경부 생활하수과 / 2018.10.)

-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

○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(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)

- 참여하는 자의 능력, 사업의 수행실적,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함

바. 위탁 소요예산 : 연간 1,701,907천원(원가산정용역 기준)

[단위 : 천원]

계	인건비	고정경비	이윤	부가세
1,701,907	1,191,111	215,424	140,653	154,719

※ 변동비(전력비, 연료비 등) 별도 3,994,634천원

○ 상세내역

구 분			금 액(원)	비 고
고정비	인건비	직접인건비	1,191,110,861	20명 기준
	고정 경비	보 험 료	11,154,082	
		복 리 후 생 비	167,818,860	
		안 전 관 리 비	11,602,900	
		교 육 훈 련 비	128,000	
		기 타 경 비	24,720,000	
고정비 합계			1,406,534,703	
이 윤(10%)			140,653,470	
부가가치세(10%)			154,718,817	
총괄원가			1,701,906,990	

사진대지

□ 위치도



□ 조감도



재 산 현 황

구 분			건 물		토 지		비 고
			동 수	연면적 (m ²)	필 지	면적 (m ²)	
합 계			1	5,694			
공 유 재 산	행 정 재 산	공용 재산					
		공공용 재 산	1	5,694			
		기업용 재 산					
		보존용 재 산					
	일 반 재 산	행정 재산 외 모든 공유 재산					

위 탁 시 설 현 황

<건축물>

구분	연면적(m ²)	건축물 내역
계	4,698.27	
지하2층	474.93	슬리지공급실, 재이용수/공정수 저장조, 급수설비실
지하1층	227.91	재이용수/공정수 저장조, 슬리지배출설비실, 슬리지저장조
지상1층	1,943.79	반입장, 탄화실, 전기실, 비상발전기실, 공기압축기실
지상2층	700.45	중앙제어실, 사무실, 휴게실, 견학홀, 악취제거설비
지상3층	1,351.19	건조기실, 공간악취제거설비

관 계 법 령

□ 「하수도법」

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
-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관리대행업자”라 한다)에 공공하수도의 운영·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□ 「하수도법 시행령」

제15조의3(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1.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: 단순관리 대행계약
 2.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: 복합관리 대행계약
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.

□ 「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」

환경부 생활하수과-3524호(2018.10.18.)

기술제안서(사업수행능력, 사업수행 계획, 가·감점)와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기술평가 후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 순으로 협상 절차를 통하여 지자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하도록 한다.

□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

제52조(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)

-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, 사업의 수행 실적,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□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-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소 관 부 서		하 수 과
입 안 자	과 장	변 상 용
	담 당	이 윤 환
	담 당 자	박 진 오 (480-4512)